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8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6.

다. 회 부 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위기대응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재 원	◦ 제73조의5제1항2)에 따른 납부금 ◦ 제73조의8제1항3)에 따른 납입금 ◦ 제73조의9제2항 후단에 따른 보전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정부의 출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용 도	◦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 조성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위기 예측 등 조사·연구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응·협력 ◦ 해외여행자에 대한 건강·감염병 정보 제공 및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감염병위기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관 리	◦ 질병관리청장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3조의5(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3조의8(재원의 적립) ① 정부는 매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73조의4제1호의 용도를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은 매년 해당 용도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제73조의4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개정안”이라 함)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예방접종, 방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재정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이 반복되고 그 주기가 단축되면서, 감염병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동시에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재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확보, 국제 공중보건 협력, 위기 예측·연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초기 긴급 대응을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 전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해외 출국자가 국내 감염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병 대응은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함에 따라 국회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신축적 운용이 곤란하며, 재원인 출국납부금은 연 400억원 내외 수입이 예상되는데, 해당 규모로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안정적 재원조달이 어려워⁴⁾ 기금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⁵⁾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4) 참고로 코로나19 당시 관련 예비비 지원 규모는 2020년 1.1조, 2021년 4.0조, 2022년 1.1조에 달함

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주요 재원 중 ‘감염병예방법개정안 제73조의5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해외 이동 과정에서 감염병의 유입·확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기금의 용도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초기 긴급 대응, 의료·방역 물품 비축, 감염병 위기 예측·연구,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응·협력 등 감염병 대응에 직접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재원-용도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출국납부금은 사실상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적 성격의 재원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⁶⁾하고 있는 바, 이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⁷⁾ 및 「제주특별자치도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⁸⁾에 따른 출국납부금을 출국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에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⁹⁾되었으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출국납부금 또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폐지로 인해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 위기는 발생 시점과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감염병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 이러한 특성상 감염병 대응은 평시 예산 편성·집행 절차에 따른 대응보다는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신축적인 재정 운용 수단의 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9) 대통령령 제34539호(2024. 6. 4 개정, 2024. 7. 1. 시행)

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통해 위기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재정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과거 코로나19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예비비를 통해 대규모 재정소요를 신속히 지원한 전례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또한,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일반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감염병은 일반적인 자연재난과 달리 국제적 확산 가능성과 장기화 위험, 보건의료 체계와의 직접적 연계성 등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재정 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법개정안 제73조의8¹¹⁾은 정부가 매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국제적 비상사태에 초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코로나19 초기단계 예비비 지원규모: 1,041억원('20.2.18.), 269억원('20.3.3.), 7,228억원('20.3.11.)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3조의8(재원의 적립) ① 정부는 매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73조의4제1호의 용도를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은 매년 해당 용도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제73조의4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국납부금은 해외 출국 인원 규모에 따라 징수액이 변동될 수 있어, 국제 정세, 경기 상황, 감염병 유행 여부 등에 따라 기금 수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감염병 확산 시기에는 출국 인원이 급감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기금 수입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문 의 처
02)6788-5152